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6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 홍기원 · 송옥주 · 조승래

이정문 • 박상혁 • 박정현

한준호ㆍ허 영ㆍ복기왕

이기헌 • 민병덕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제기됨. 아울러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에는 다른 품목 및 차량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운임의 투명한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및 제5조의9 신설 등).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 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 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 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 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록 의 작성·보관·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 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 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컨테이너(「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위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2. 시멘트와 시멘트의 원료

- 3. 철강재
- 4.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 6.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및 사료
- 7.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운송되는 운송품목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제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운송하려는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 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운송하려는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 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 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 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⑤ 제5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운송하려는 화주 및 운수사업자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

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 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 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 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6(국회에의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과거의 결과를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 및 평가한 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 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u><</u> 삭	제>			
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					
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u>다.</u>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					
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					
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 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 임할 수 있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 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 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 비용
-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
 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 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 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 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 <삭 제>

<삭 제>

- 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 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 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 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 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 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 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 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 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삭 제>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 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

<삭 제>

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 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등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신 설>

<u><삭 제></u>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u>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u> <u>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u> 류 등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 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신 설>

<신 설>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록의 작성·보관·관 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 의・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 비용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 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 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 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 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 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운 송되는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 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 여야 한다.
- 1. 컨테이너(「관세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환적을 위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2. 시멘트와 시멘트의 원료
- 3. 철강재
- 4.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 6.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및 사료
- 7.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신 <u>설></u>

운송되는 운송품목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 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제5조의11제2항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운송하려는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운송하 려는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 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 다.
 - ③ 제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화물운 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 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 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 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 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 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제5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운송하려는 화주 및 운수사업 자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 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 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 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 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신 <u>설></u>

<신 설>

- <u>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u> 영하여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 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6(실태조사 등)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매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과거의 결 과를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화 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과 등 을 조사·분석 및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